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방향

kiri



2014. 9. 30

류 건 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I 목 차

I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3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8
III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 개혁	17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24



I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I.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 2013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 GDP 대비 9.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 사회보장위원회(2014) : 2060년 국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9.0%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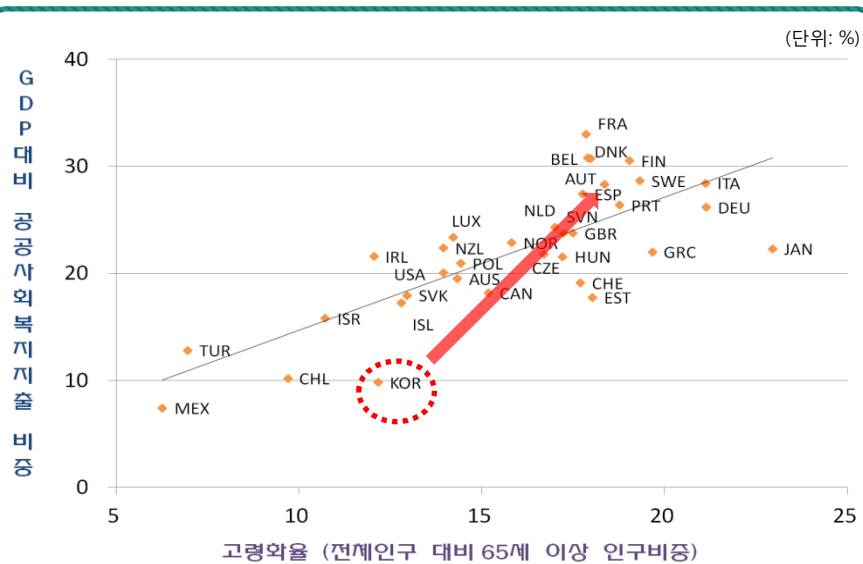
OECD 국가의 고령화 속도

(단위: 년)

구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일정수준에 도달한 연도			도달기간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고령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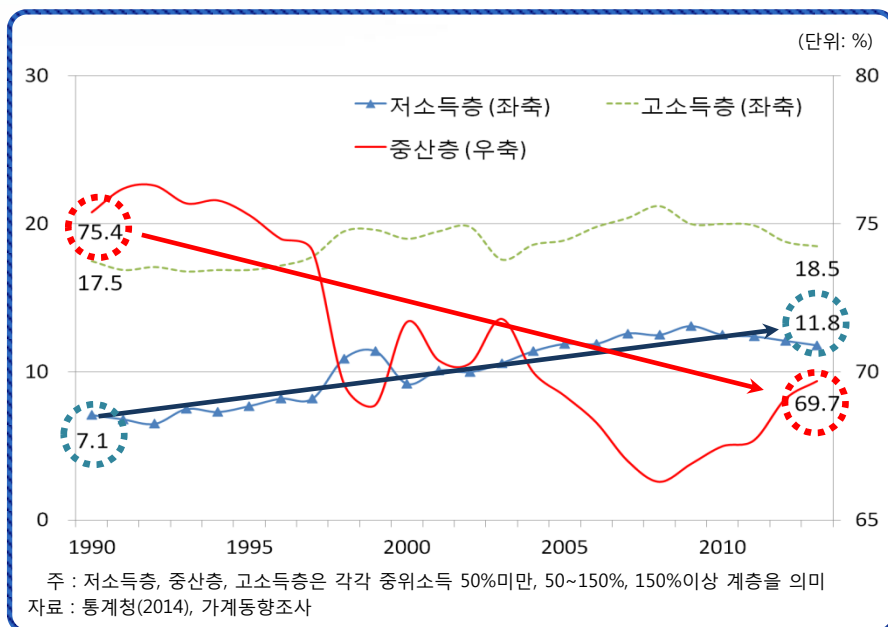


주 : 터키(2009), 일본(2010), 멕시코, 칠레(2011)를 제외한 국가는 2013년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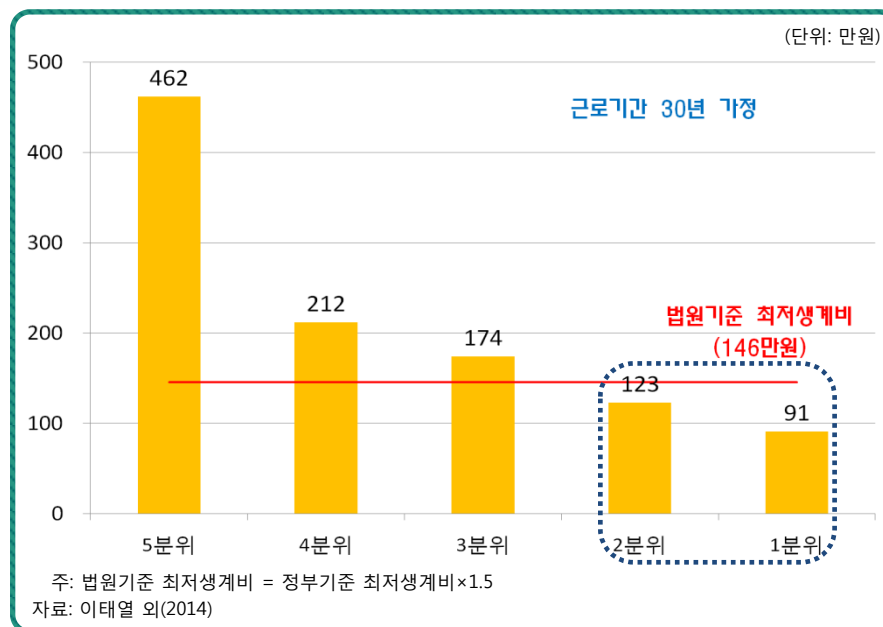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확대와 노후소득 미흡

- 소득양극화 심화 : 저소득계층 비중 확대 추세 (1990년 7.1% → 2013년 11.8%)
- 현행 소득보장체계에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위험 증가
 - ▶ 1, 2분위의 경우 법원기준 최저생계비에 미달 → 공·사 소득보장체계 개편 필요

소득계층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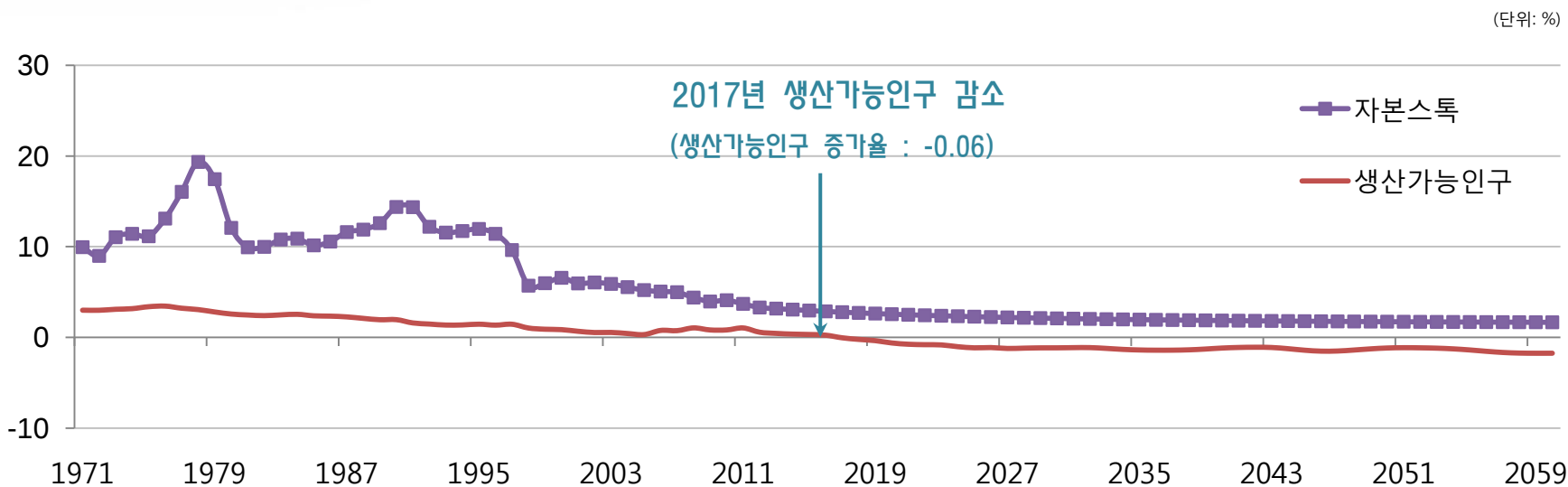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추정



경제성장 여력 부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한계

- 잠재성장을 감소(장기적으로 1~2% 수준)로 복지재원 마련 한계
-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 성장동력 약화
 - ▶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증가율 감소

주요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자료: 이태열 외(2014)

■ 소득복지 환경 고려 시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 노후보장 제고

-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공사간 유기적 협력 강화 필요
 - ▶ 사회안전망 = 공적안전망 (협회의 사회안전망) + 사적안전망
- 소득계층별 사적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등을 고려한 저소득층의 사적안전망 역할 논의 필요

소득계층별 사적안전망 의의 및 역할

	저소득계층 (소득 1, 2분위)	중소득계층 이상
의의	공적안전망의 보완적 역할	공적안전망의 완충적 역할
역할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제고	저소득층으로 하락방지 기능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1. 취약계층의 연금가입 측면

● 사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적연금 취약계층은 확산되는 추세

▶ 사적연금 취약계층 = 저소득계층 + [비자발적] 미가입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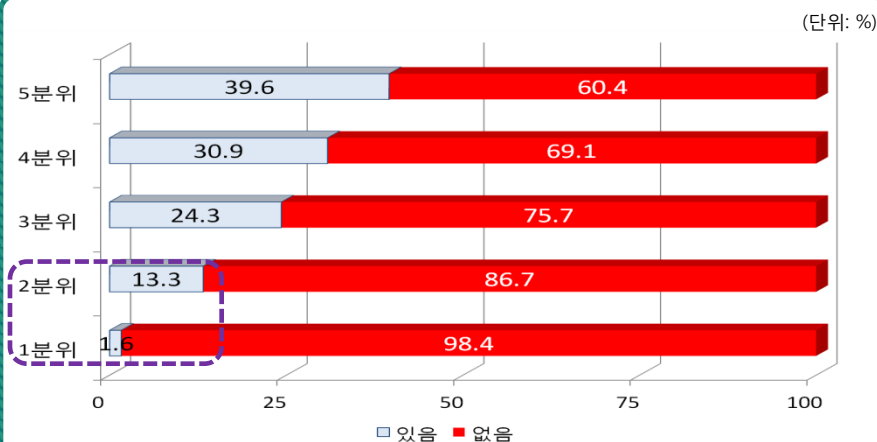
● 소득 1, 2분위의 연금상품 보유율은 각각 1.6%, 13.3%에 불과

※ 잠재적 취약계층 추정결과 3분위의 15.6%가 2분위(저소득층)로 이동 [부록2 참조]

사적연금 취약계층 유형

	구분	협의	광의
소득 기준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저소득 근로자	●	
	저소득 자영업자(비근로자)	●	
	저소득 베이비 부머		●
미가입자 기준	전업주부	●	
	대학생	●	
	군인 (직업군인 제외)	●	

소득분위별 연금상품 보유 현황



주: 1) 연금자산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연금부채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의미함

2)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채로 분류됨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3),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1-1.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측면

- 독일, 미국 등과 비교시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계약유지율 또한 미흡
-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은 개인연금 가입혜택을 누리지 못해 사각지대화
 - ▶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에 불과

연금 가입률 및 유지율 현황

개인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영국	미국	독일	한국
18.1%	24.7%	35.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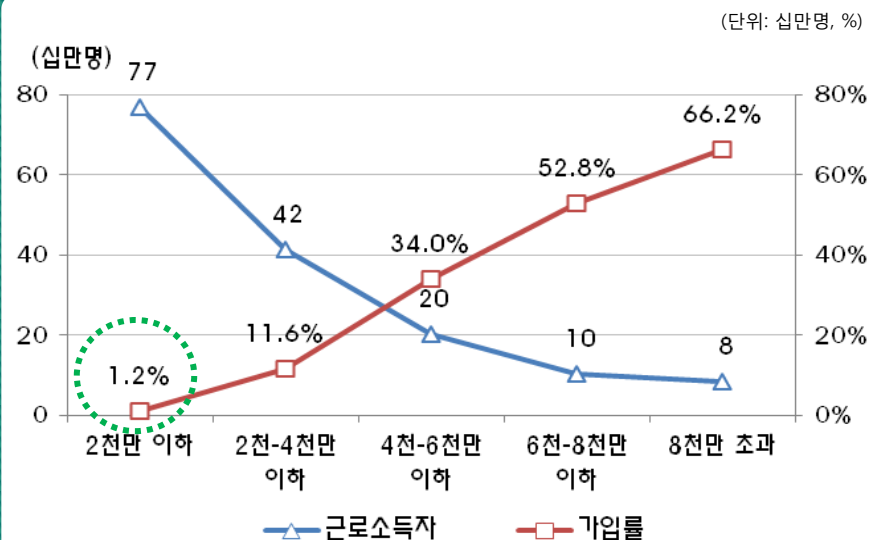
자료 : OECD(2011,2014)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10차년도
95.5%	86.0%	72.4%	52.4%

자료 : 금융위원회(2014)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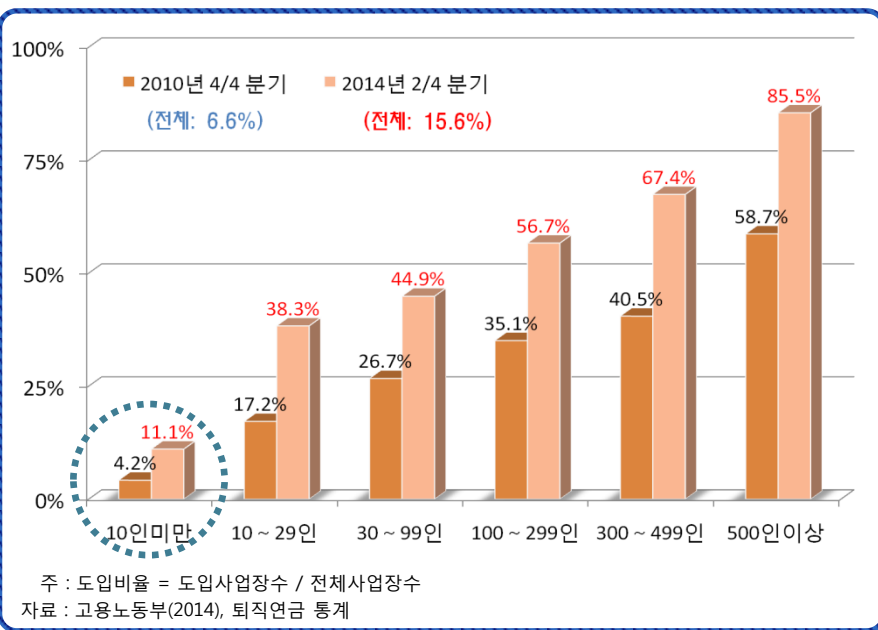
1-2.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측면

●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은 현저히 낮은 수준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 11.1%에 불과

※ 정부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가입유도 제시 (14년 8월 27일)

회사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정부안)

구분	세부 내용
대상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지원	◆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 저소득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10% ◆ (자산운용수수료 지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2014)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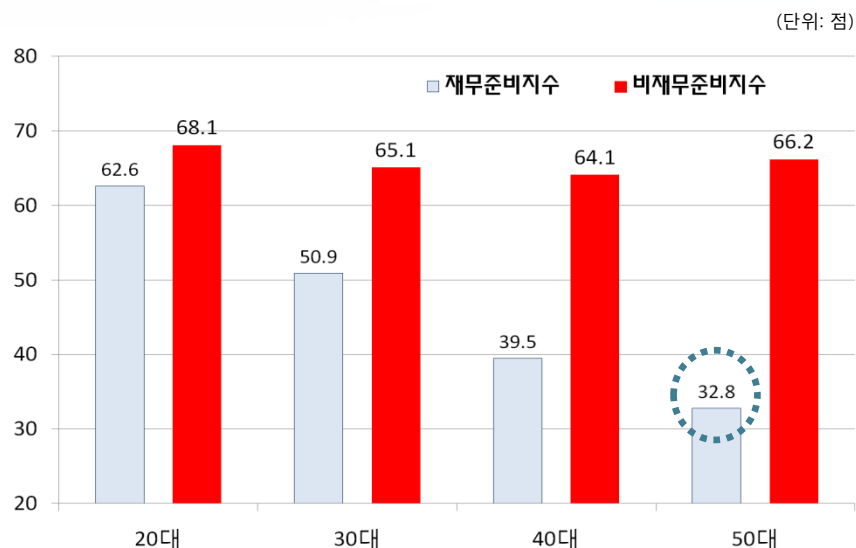
1-3.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측면

● 50대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대비 미흡

▶ 50대 노후준비지수 중 재무준비지수는 32.8점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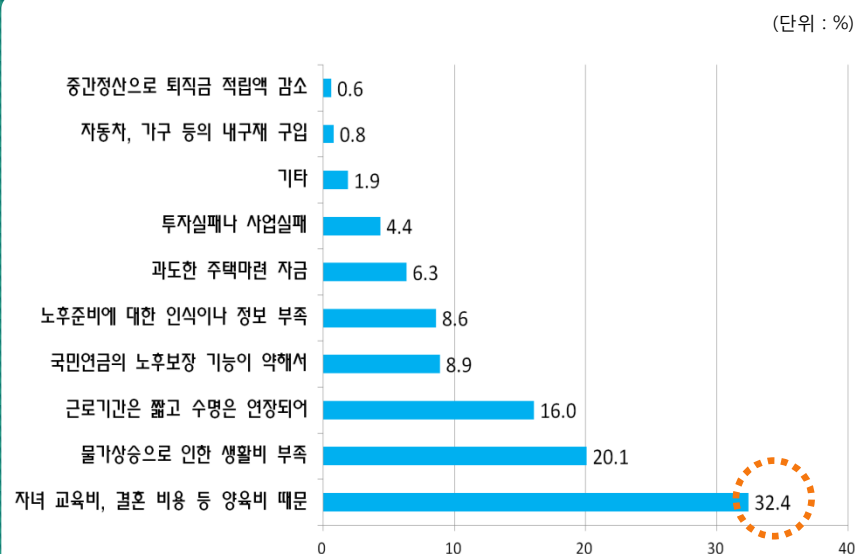
※ 미국, 호주 : 중·장년층에 추가세제혜택(추가 기여플랜)으로 연금가입 유도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주 : 비재무영역으로는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이 포함됨.
자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

은퇴준비 부족의 원인



자료 : 보험연구원(2013)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2. 취약계층 중심 제도운영 측면

- 영세사업장에 대한 투자교육 부진 → 투자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운용 대책 미흡

취약계층 대상 제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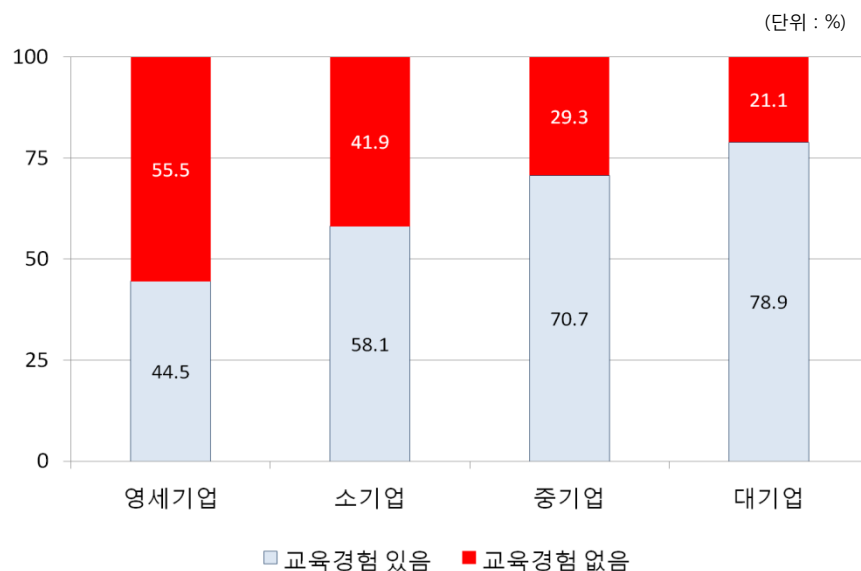
투자 교육

- ❖ 취약계층(영세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교육 부진
→ 투자지식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우려

자산 운용

- ❖ 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운용대책 미흡
→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미흡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경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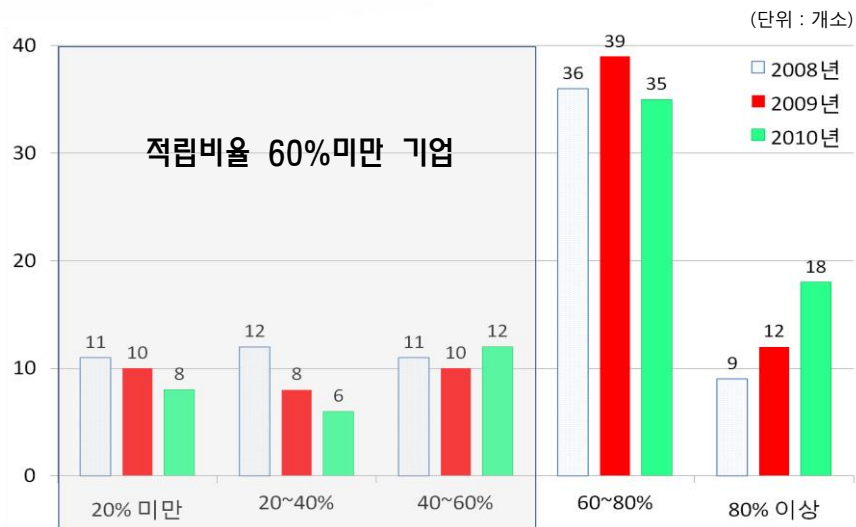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12)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3. 연금수급권 보호 측면

- 사전적 수급권보호 취약 : 책임준비금의 60%미만만 사외적립하는 기업 상당수
- 사후적 수급권보호 미비 : 최대 3년간 퇴직급여 보장
- ▶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속년수(4.8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 수급권 보호와 괴리

확정급여형 기업의 적립비율



주: 500인 기업중 79개사 재무정보를 조사한 결과임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연금수급권 보호장치 문제

구분		제반문제
사전적 수급권 보호	최소적립 수준 (기준책임준비금)	최대 30%의 미적립채무 발생
	적기시정조치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괴리
사후적 수급권 보호	채권자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3년 보장으로 실질적 수급권 보호에 한계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4. 연금전환대책 측면

● 저소득층을 고려한 연금소득 관련 세제 미흡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차등화 추진 (2014년 연금세제 개편안)

● 저소득계층(고령층 포함) 대상 연금상품개발 및 연금전환방식 부재

※ 2014년 6월말 퇴직급여 형태별 지급현황 : 연금수급자 2.7%에 불과

취약계층 관련 세제

소득계층별 차등화 측면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소득수준별 과세 (연금세제개편안)
- 연금소득세 : 계층별 세액공제를 미차등

직종 등 속성별 차등화 측면

- 가입자 특성별 차등화 미흡
(미·일 등: 직종별,연령별 차등화)

연금전환방식 비교

국가 \ 유형		일시금 허용		연금지급기간		프로그램
		전부	일부	확정	종신	허용
의무 전환	칠레	▲	×	×	●	●
	영국	▲	●	×	●	●
디폴트 연금전환	스위스	●	●	×	●	×
	미국 DB				●	
자발적 선택	미국 DC	규제 없음				

II.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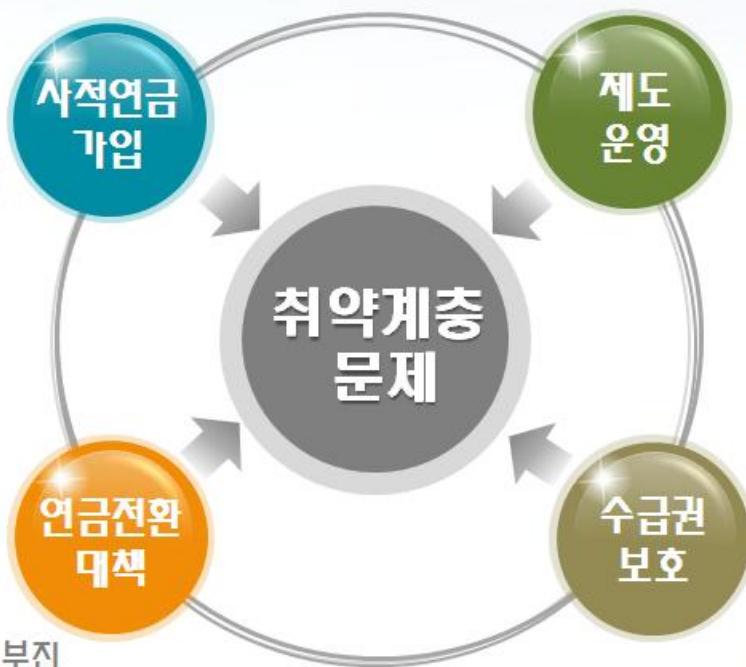
■ 사적연금 취약계층 문제 요약

취약계층 연금가입 저조

- 저소득계층 개인연금가입 미흡
-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부진
- 저소득 베이비부머 연금사각지대화

연금전환대책 미흡

- 저소득계층의 연금전환대책 부진
- 연금세제지원 미흡 등



취약계층 중심 제도운영 한계

- 안정적인 연금재원 확보 미흡
- 저소득층 투자교육 저조 등

연금수급권 보호 제약

-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 미흡

III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OECD 국가의 연금개혁 Trend

- 공사 간 역할 분담
- 사적안전망 강화
- 저소득계층 보장

취약계층 대상 사적안전망 사례

- 적용범위 확대
- 급여수준 적절성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연금개혁 트렌드 : (1) 공사간 역할분담

-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연금 역할분담 체계로 전환
 - ▶ 1970년대: 복지황금기(공적복지중심), 1980년대 이후: 공적 중심의 소득복지체계 지양
- OECD 국가 : 4개의 방향으로 연금개혁 추진 (공통점은 공적연금 축소)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체계

구분	공적연금		
	대체(substitutive)		보완 (add-on)
	완전대체	부분대체	
사적 연금	I: 완전민영화 칠레(1981), 멕시코 (1997) 등	II: 부분민영화 스웨덴(1999), 헝가 리, 폴란드, 슬로바키 아 등	V: 법정화 또는 단체협약 호주(1993), 스위스(1985),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 란드(1974), 스웨덴, 뉴질 랜드(2007) 등
	III: contract-out 영국(1975 등) 페루(1993), 콜롬비 아(1994), 아르헨티 나(1994)	IV: contract-out 일본(1966)	VI: 세제유인 및 보조금등 미국(1974), 독일(2001), 한국 등

자료 : 류건식(2013)

공사연금개혁 트렌드 (OECD국가)



연금개혁 트렌드 : (2) 사적안전망 강화

- 부분적(파라메타적) 개혁에서 전면적(패러다임적) 개혁으로 점진적 전환
 - ▶ 부분적 개혁 : 보험료 인상, 지급액감소 등, 전면적 개혁 : 민영화, 적용제외 등
- 사적안전망 강화 : 고령화 영향 등으로 보완적 역할에서 대체적 역할 담당

대체기능 중심의 사적연금 역할

국가	가입 강제여부	사적연금 역할	국가	가입 강제여부	사적연금 역할
미국	임의	보완	영국	임의	적용제외 보완
일본	임의	적용제외 보완	독일	임의	보완
스웨덴	법정강제	부분대체	프랑스	법정강제	부분대체
호주	강제	완전대체	캐나다	임의	보완
네덜란드	강제	부분대체	덴마크	강제	부분대체
핀란드	강제	부분대체	이탈리아	임의	보완

사적연금제도 의무화 국가



연금개혁 트렌드 : (3) 저소득계층 보장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복지 강화를 위해 공·사영역 모두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공적부문 : 공적연금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적부문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사적연금 가입 지원 → 사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노력
- 정부 지원 :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 강화

	공적 안전망	사적 안전망
적용범위 확대 (coverage)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계층 대상 재무 또는 비재무적 지원 등 [부록3 참조]
급여수준 적절성 (adequacy)	일정수준 이하의 연금급여 수령자에 대한 최소금액보장 등	소득공제 상한증대 차등적 세제지원 등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 취약계층 대상 사적안전망 사례 : (1) 적용범위 확대 - 가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 : 다양한 형태로 사적연금 가입 지원
 - ▶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가입의무화, 인증형 개인연금제 [부록4 참조], 교육 IRA제도 [부록5 참조] 등

적용범위 확대 (COVERAGE)

사용자의
운영자금 및
기여금 보조

중소기업
퇴직연금가입유도
(NEST)



세제혜택
보조금지원

인증형
개인연금
(Riester)



저소득
근로자의
기여금 매칭

납입기여금의
일정비율을
개인계정에 기여



저소득
베이비부머
지원

Catch-Up
Contribution
Plan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교육 IRA
도입에 의한
교육비 지원



의료비지원
기금적립

노후의료비
지출 발생 시
적립금 인출



전업주부 등
연금가입유도

사적연금
취약계층
가입유도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 취약계층 대상 사적안전망 사례 : (2) 급여수준 적절성

-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수준(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투자지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 최소한의 운용수익률보증,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금소득세 개편,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

급여수준의 적절성 (소득대체율)

운영 측면

저소득층
투자선택지원

디폴트
투자옵션



최소수익률
보증

최저수익률
보증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

연금지급
보증제도



인출요건
완화

적립금 일정
한도 인출허용



배분 측면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화

근로자, 자영
업자 차등적용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강화

종신연금
비과세 허용



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개혁 정책 요약

주요국의 취약계층 대상 연금정책

적용범위 확대

사용자 운영자금 및 기여금 보조, 세제혜택, 저소득 근로자 기여금매칭, 베이비부머 지원, 교육IRA

급여수준

적절성

◆ 운영측면

저소득층 투자선택 지원,
최저수익률보증, 연금지급보증 등

◆ 배분측면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 연금수령시
세제혜택강화, 지급방식다양화 등

국내 사적연금 취약계층의 문제점

저조한 연금가입

◆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베이비부머

제도운영 및 수급권 보호 취약

◆ 취약계층의 운용대책, 투자교육, 수급권보호 등

연금전환 대책 미흡

◆ 저소득층 연금전환대책, 연금세제지원 등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금가입 측면

-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 연금가입 허용 및 혜택 부여

연금전환대책 측면

- 연금전환대책으로 사적안전망 제고

제도운영 측면

-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금가입 : (1)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일정기간 수익발생: 과거분, 연금전환(예: IRP수령) 유도
- ▶ 영세사업장의 속성(미이행 원인 등) 파악 : 기업부담 등 원인별 대책방안 마련

구분	의무화 대책 내용	검토 방향
의무화 적용	-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 (기존근로기간: 퇴직금제 유지)	- 수익발생시(예:3년) 과거분 상각 조치(연금전환) 또는 과거분 퇴직금 유지시 IRP로 수령의무화 (이유: 연금재원 소실 우려)
미 이행시 조치	- 기업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등 벌칙부과 (기업별 미이행 원인 파악 부족)	- 영세사업장 미이행 원인 사유파악 - 원인별 연금전환대책 마련 (이유: 기업부담 가중)
관리감독체계	의무화 후 폐업하는 사업장 관리 관련 내용 부재	- 폐업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 점검 (이유: 폐업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호문제 발생)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금가입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재정지원 대상 및 기간, 징수 및 영업체계 등 검토
 - ▶ 실질적 지원 차원 : 재정지원 대상은 축소하되, 지원수준은 두텁게 하는 방향 모색
 - ▶ 최소한의 운용수익을 보증하거나 일몰규정 설정으로 재정지원기간 탄력적 조정
- 공사간 역할 제고 및 근로복지공단 영업현실 감안 : 퇴직연금 모집인 활용 검토

구분	퇴직연금기금 관련 내용	검토방향
재정지원 대상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넓고 얇은 지원)	짧고 두터운 지원(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최소보증이율	연금 없음	검토 필요 (예: 스위스)
재정지원기간	한시(3년) 지원	- 일몰 규정설정 (기간연장 규정) 검토 - 임금채권보장기금보험료 일정기간납입유예 조치
영업형태 등	연금 없음	퇴직연금 모집인의 영업 활용 검토 (이유: 공사역할강화 및 근로복지공단 영업현실 고려)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금가입 : (3)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70%→40%)에 대한 국민연금 급여축소 보전 필요
 - ▶ 개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차원에서 중요
 - ▶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자립(자활)기회 제공, 연금가입증대 →고령화리스크 감소
-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시, 2분위 → 3분위 이동 27% [부록7 참조]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 중산층)

운영 시스템

- 독일 방식 준용 [부록6 참조]

지원 형태

- 저소득계층 대상 보조금 중심 (면세점 이하)

연금상품 인증기준

- 급부: 국민연금 수급시점 연계, 연금설계: 종신(원칙), 적립금: 원리금보장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금가입 : (4) 저소득계층의 연금가입 허용 및 혜택 부여

- 저소득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 및 세제혜택 강화
 - ▶ 전업주부, 대학생 등 (비자발적) 사적연금 미가입층 : 퇴직연금 가입 허용
 - ▶ 저소득 베이비부머 : 세제혜택 등을 통한 가입유도

취약계층 대상 정책방향

베이비부머	전업주부	대학생
• 공제한도 추가인정 허용 검토 - 호주 및 미국의 Catch Up Plan • 교육 IRA제도 도입 검토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연금계좌 설정 (미국식 IRA제도)	• 퇴직연금을 미보유한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 납입부담금에 대해 배우자 합산 세액공제	• 대학부터 원칙적 퇴직연금가입 허용 - 낮은 취업으로 인한 짧은 근로기간고려 - 부모 : 보험료 대납(한도설정), 세액공제인정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2.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 수익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 **자동적용형(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도입 및 캐시밸런스형 연금활성화**
 - ▶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장치 마련,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

자산운용 (디폴트옵션)

- 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한 자동적용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 도입 및 캐시밸런스형 연금 활성화 검토
 - 사전 검토과제: 손실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수급권 보장장치

- 단기적으로 퇴직급여 우선변제기간 확대 (평균근속기간 감안)
-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

투자교육 강화

-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
 - 종합적인 가입자교육(투자교육)으로 전환(은퇴교육 포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심 가입자 교육 강화 등

IV.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3. 연금전환 대책으로 사적안전망 제고

● 저소득계층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화 및 세제 개선

- ▶ 저소득계층 전용 연금개발 및 자율적 연금화 유도 (저소득층의 적립금 규모 고려)
- ▶ 저소득계층의 연금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 차등화 → 연금수령 유인책 강화

구분	방향	이유
연금전환 (자율적 연금화)	- 연금전환방식 다양화(부분연금제 도입 등) - 중도인출의 유연성강화	- 중도해지,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보편화 * 저소득층의 적립금 규모 고려
연금세제	- 저소득계층 연금수령 유인책 강화 *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소득 비과세(네덜란드) * 종신연금 수령시 비과세(호주, 칠레 등)	-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간 차이 미미 (30%)
연금상품	-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지원 (고연령거치연금 등)	- 저소득계층(고령층 포함)에 부합한 연금상품 선택권 제약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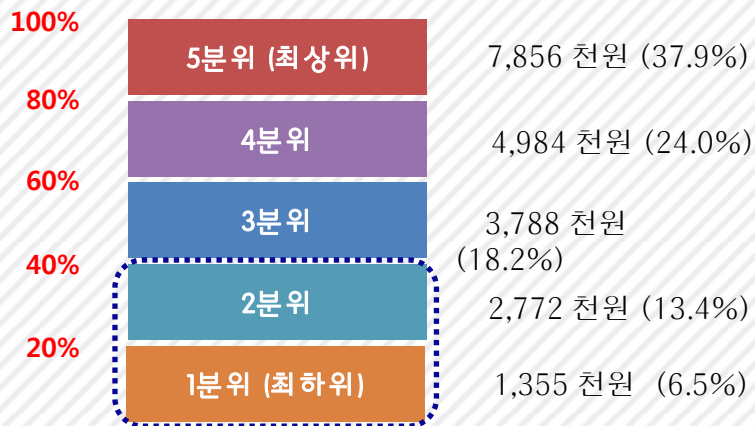
[부록1] 소득계층 구분에 관한 정의

● 저소득계층(소득 1, 2분위) :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불과

▶ 저소득 계층 : 소득 1, 2분위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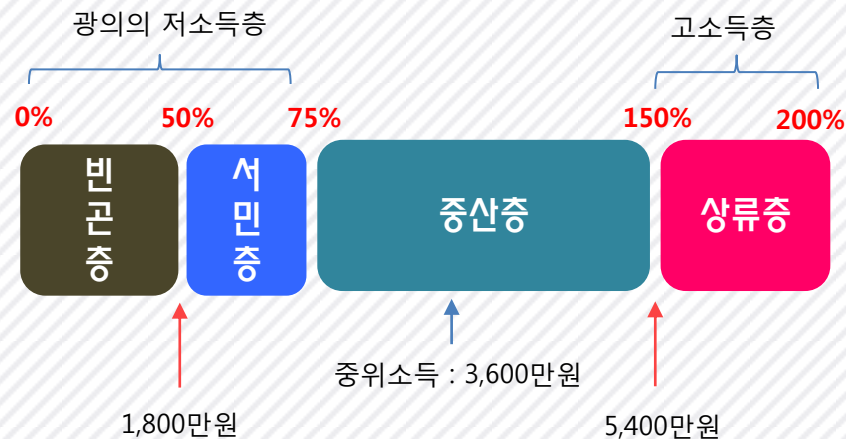
소득계층의 분류 (절대적 기준 vs. 상대적 기준)

소득 5분위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주 : 분위별 월 평균소득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분위별 소득점유율임.
자료 : 통계청(2014),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중위소득 (Median Income) 기준



주 : 연소득 기준이며, 통계청 2014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기준으로 월평균 중위소득은 378만원임.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3),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부록2] 잠재적 취약계층 추정

■ 사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사적연금 미가입시 소득계층 하향이동 심화 : 저소득계층(1, 2분위) 비중 증가
 - ▶ 소득계층 하향 이동 : 3분위의 15.6%가 2분위로 이동
- 소득절벽 등으로 연금가입 해지시 잠재적 취약계층 증가 우려

사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 (소득활동자 전체)

구분		소득 (미가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소득 및 사적연금 (가입)	1분위	100%					100%
	2분위	2.2%	97.8%				100%
	3분위		15.6%	84.4%			100%
	4분위			9.5%	90.5%		100%
	5분위				11.3%	88.7%	100%

분석가정

1. 현재와 미래의 소득계층이동은 없음
(모든 계층에 동일 비율 소득 증감)
2. 모든 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은 현재와 미래 모두 동일
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3.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은 동일(20년),
할인율과 투자수익률 또한 동일
(현재기준 납부액 = 급여액)

주 : 소득 및 사적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함. 즉, 1분위는 소득 및 사적연금 납부액 기준 하위 20%를 의미함

재무적 · 비재무적 정부지원 (예: 퇴직연금)

구분	형태		내용
재무적 지원	사용자	자금대출	• 운영자금 및 기여금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예: 대만의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
		운영자금	• 제도 운영자금의 일부 보조 (예: 미국)
		기여금	• 사용자 기여금의 일부 보조 – 중소기업 퇴직공제의 기여금보조(일본)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여금보조(미국)
	근로자	기여금매칭	• 저소득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기여금 납부 시 납입기여금의 일정비율을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기여 (예: 호주의 co-contribution)
비재무적 지원	사용자	운용요건 간소화 운영서비스 지원	• 제도도입 및 운영 시 필요한 법적 요건 완화 • 제도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근로자	제도가입지원	• 연금가입의 차별적 규정 철폐(예: 미국 등)

자료 : 고용노동부(2014), 류건식(2013)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 비교

	독일 (Riester)	오스트리아 (PZV)	영국 (NEST)	프랑스 (PERP)
적립금보증 (원금보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수급방법	• 늦어도 85세까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액 반환 및 과제	• 75% 종신연금 - 일시금 25%까지 비과세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자동가입	임의가입
정부지원	•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 보조금과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 적용	보조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제도운영 (디폴트옵션)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있음	설정의무 없음

자료 : 보험학회 한일 특별세미나 자료(2014)

교육 IRA 제도 내용 및 특징

도입배경

-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육비 재원 마련 (교육비 절감)

적용대상

- 저소득계층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 지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교육 IRA 설정

세부내용

- 자녀는 언제든지 적립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 사용
 - 인출금액은 전액 면세혜택 부여
- 교육비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형제, 자매에 세금 없이 양도 가능
 - * 세법상 소득이 110,000달러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대효과

-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화

- 가입자 소득이 낮을 수록, 가족구성원이 많을 수록 보조금 혜택이 큰 구조
- 연간소득 3만유로 이하 가입자 비율이 70.8% → 저소득계층 가입 효과 뚜렷
 - ▶ 리스터 연금 도입 이후 개인연금가입 급증(2014년 2분기 기준 약 1,597 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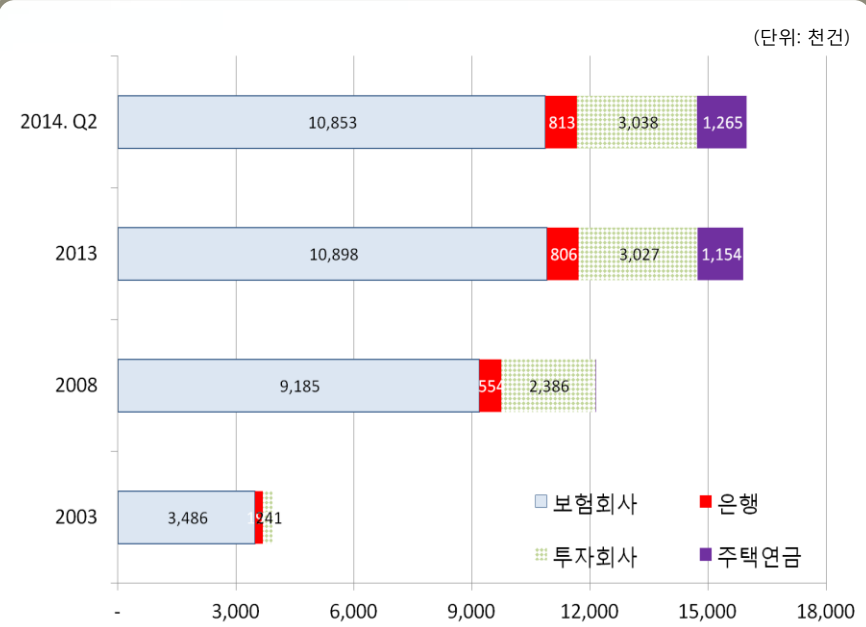
소득 및 가족구성원 별 보조금 및 보험료

(단위: 유로)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주 : 두 자녀를 가진 부부 기준임(2008년 이후)

금융회사별 보유계약건수



자료: <http://www.bmas.de>

[부록7] 보조금지원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 보조금 지원 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 상향계층이동 (보조금 많을수록 탄력적) 뚜렷

▶ 사적연금 보조금 월 3만원 지급 시 : 2분위 → 3분위 이동 확률은 27.0%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

보조금 이전		보조금 이후	1분위	2분위	3분위
보조금 3만원(월)	1분위		99.0%	1.0%	
	2분위			73.3%	27.0%
보조금 5만원(월)	1분위		97.3%	2.7%	
	2분위			71.6%	28.4%
보조금 10만원(월)	1분위		86.3%	13.7%	
	2분위			68.8%	31.2%

분석가정

1. 현재와 미래의 소득계층이동은 없음 (모든 계층에 동일 비율 소득 증감)
2. 모든 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은 현재와 미래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3. 가입기간=수급기간(20년), 할인률=투자수익률 (현재기준 납부액 = 급여액)
4. 소득 1,2분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5. 보조금수준은 1,2분위의 국민연금 평균 납부액인 10만원의 30, 50, 100%

주 : 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소득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분석함(국민연금 가입대상)